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146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카이특허법인(유한)

담당변리사 이덕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상은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6. 3. 13. 2025당9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7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8. 3. 30./ 2019. 2. 13./ 상표등록 제1446648호

2) 표장: **오브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생화 화환 도매업, 생화 화환 소매업, 생화 화환 판매알선업, 생화 화환 판매대행업, 생화 화환 중개업, 생화 화환 구매대행업, 조화 화환 도매업, 조화 화환 소매업, 조화 화환 판매알선업, 조화 화환 판매대행업, 조화 화환 중개업, 조화 화환 구매대행업, 풍선 화환 도매업, 풍선 화환 소매업, 풍선 화환 판매알선업, 풍선 화환 판매대행업, 풍선 화환 중개업, 풍선 화환 구매대행업

나.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1) 표장: 오브제화환

2) 사용상품: 장식용 받침대가 있는 화환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5. 4. 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5당937호로 심리하여 2026. 3. 13. '확인대상표장은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유사하나,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오브제'는 화환과 관련 있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아니고, '오브제화환'이라는 명칭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사용해 온 것이므로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¹⁾

'오브제화환'은 거래계의 사용 실태 및 수요자의 인식을 고려하면, '전용 받침대를 사용한 화환 등'을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고,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상품의 용도 또는 일반적인 명칭과 나란히 사용하였으므로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보통명칭,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

1) 피고는 2026. 5. 18. 자 답변서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중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부분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

론을 같이하여 위법하지 않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참조).

나)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의 취지 참조).

2)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2, 3, 6, 1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오브제'는 프랑스어 'objet'의 한글 음역으로 '물체, 사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갑 제9호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 등에 '꽃꽂이에 서 꽃 이외의 재료'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인 2005. 10.경부터 2025. 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화환과 관련하여 '오브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론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을 제19, 20, 21, 23, 24호증).

증거번호	내용
을 19-2 (2005. 10. 27.)	‘분리형 화환’ 전시회 [서울신문]서울신문사와 농림부가 후원하고 한국화원협회 주관,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주최로 ‘분리형 화환(오브제) 전시회’가 26~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을 20 (2008. 11. 3.)	‘창업 길라잡이’ 중기청 소상공인지원 ‘이런 서비스까지’ 下· 배우고 싶지만 너무 멀어서… 전문교육은 음식업 이·미용업 슈퍼체인 세탁업 자동차정비업 화훼업 화장품업 등 7개 업종에 걸쳐 26개 과정, 80개 과목으로 짜여져 있다. 업종별 기초 지식과 매장 관리 요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화훼업의 경우 ‘최신오브제 화환 제작기법’‘식물모아심기 제작기법’‘꽃상품 제작기법’ 등 전문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을 21-1 (2010. 10. 28.)	대전화원협회 "화환 재사용 막아야" 아울러 낭비라는 인식이 큰 '3단 화환' 대신 '2단 오브제 화단' 등 개량 화환에 대한 전시 홍보와 판매에도 나서기로 했다.
을 21-2 (2013. 11. 20.)	[경제브리핑]KEIT '스마트카 분야 산업부 R&D 과제 정보교류회' 개최 外 ▲농림축산식품부가 22~24일 고양시 호수공원 내 고양 꽃전시관에서 '2013 대한민국 화훼대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13 대한민국 화훼대전'은 화훼인들이 한 해 동안 생산한 꽃과 꽃으로 만든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중앙전시존(각종 화훼축제, 경연대회 입상작 전시), 주제관(전통오브제, 신화환, 웨딩장식, 최고품종, 꽃체험 등), 산업홍보관(신품종, 신화환, 단체관, 지자체관, 명품관 등), 6차 산업관(꽃차, 식용꽃, 압화, 매직플라워, 힐링원예), 수출관(K플라워, 로즈피아, 선인장 등) 등으로 나눠 전시한다.

을 21-4 (2014. 3. 12.)	재활용에 중국산 꽃으로 치장 시든 20여송이만 교체 "분통" 광주 서부경찰서가 11일 현 조화를 가져다 새 것처럼 손봐 차익을 남겨 되판 혐의로 유통업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통업자들은 이처럼 1만여 개의 조화를 재활용해 35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경찰이 업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단 화환·조화 기준 백대와 날개 리본 등 이른바 '오브제'인 공산품의 기본단가는 1만1천여원이다.
을 21-5 (2018. 8. 3.)	[글마루] 꽃과 문화③ 화환의 새 물결 '신(新) 화환' 이어 원 대표는 “아무래도 신화환을 하다보면 철제오브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단가가 높다 보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다. 그렇다 보니 신화환을 만드는 입장에서, 소비자들 의 입장에서 서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며 “화환의 재탄을 막고 화훼 농가 및 지역 꽃 집을 살리고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신화 환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을 21-6 (2019. 11. 27.)	'생생정보' 장사의신 장어구이, SNS화제맛집 대왕조개전골·4층마라탕 이날 '생생현장'으로는 "신화환을 아시나요" 편으로 오브제화환으로 인기를 모으는 <권문정 플라워>를 방문한다.
을 21-7 (2020. 7. 8.)	김해시 꽃소매상인협회 창립 발대식… 코로나19성금 기탁 이날 발대식에서는 새로운 오브제바구니스타일 화환을 30여점 선보였다. 행사 이후 꽃바구니를 내빈들에게 다시 선물하는 퍼포먼스도 연출했다. 협회 회원들은 김해에서 첫선을 보인 아름다운 바구니화환이 전국 절화류 화훼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김해시의 꽃소비 촉진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을 21-9 (2021. 3. 2.)	김해시 공공형예식장 비즈컨벤션 내 新화환 사용 결혼은 新화환으로 축하해 주세요! 특히, 신화환은 기존 화환보다 인조 소재 사용 비율이 낮아 생화 사용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예식이 끝난 후 신화환으로 사용된 꽃바구니를 고객들이 가지고 가도록 하여 기존 3단 화환의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화환은 거치대(오브제)에 꽃바구니를 거치하여 1, 2단으로 활용가능하다.
을 21-22 (2022. 3. 4.)	“공원묘원 조화 근절과 오브제 화환을 돌파구 마련” 오브제 화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식물로 행사가 끝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꽃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다. 김해 지역에선 이미 널리 활성화되었다.
을 21-28 (2023. 3. 16.)	근조화환·꽃배달 전문 하진플라워, 기념일 위한 꽃바구니 신제품 출시 이외에도 3단 화환, 1단 오브제, 살화환 등의 축하화환을 포함해 경조사에 사용할 만한 다양한 개업화환, 근조화환, 꽃다발 등이 있다.

을 21-34 (2024. 3. 6.)	거베라 시장변화와 소비확대를 위한 제언 꽃들과의 혼합해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줄기 아랫부분을 잘라 화병에 꽂아두는 것이다. 소재를 추가하여 간편하게 꽃다발을 만들 수도 있고 오브제 신화환, 리스, 센터피스, 선물용 플라워 박스 등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거베라의 생육적온은 16~25℃ 정도로 저온처리나 일장처리 없이 일정 기간 영양생
을 21-35 (2025. 4. 22.)	불법 화환 퇴출 시동 ... '신화환 문화' 확산 본격화 자조금협의회는 비즈컨벤설 웨딩홀에 축하용 꽃바구니, 오브제 형태의 장식 화환, 신화환 등을 거치하거나 비치할 수 있도록 전용 화환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화환대는 불법 재탕 3단 화환의 사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협의회는 이를 2025년 절화외무자 조금 '화환 문화 개선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삼아 전국 예식장에 본격 보급한다는 계획이 다.

③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공보를 보면, 명칭이 '접철형 다단계 꽃바구니 받침대(오브제)'라고 되어 있거나 '오브제'를 화환 받침대 또는 화환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을 제10, 11, 12호증).

구분	내용
등록특허 제10-2810036호 (을 12-2)	(54) 발명의 명칭 오브제 화환 받침대 (57) 요 약 본 발명은 오브제 화환 받침대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틀 본체가 절첩식으로 사용 및 보관이 간편하며, 틀 본체로 수반을 간편하게 설치하여 보기 좋은 모양의 화환을 단시간에 제작할 수 있어 대량제작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오브제 화환 받침대에 관한 것이다.
공개실용 제97-11874호 (을 10-1)	㉔ 접철형 다단계 꽃바구니 받침대(오브제) ㉔ 요 약 본 고안은 종래의 일회성 화능3단의 비 경제적이고 원시적인 화환받침대를 20mm 직경 철재고나를 사용하여 신속한 작업성과 미려하고 견고한 구조로 조립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다단계 꽃바구니 받침대이다.
등록디자인 제30-0616540호 (을 1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조용 장식지 디자인의 설명 1.재질은 하드보드, 폼보드, 포맥스, 합판. 2.본장식지는 기본적인 경축화환 오브제 하단에 부착 하는 용도임 3.앞면에만 그림 있고 뒷면에는 모양이 없음 4.문자는 권리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제품의 요점은 실제적인 화환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근조화환 기본오브제에 부착하는 것임'(참고도면 참조)

④ 이 사건 심결일 이전인 2025. 4. 7. 기준으로 피고 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근조1단오브제화환', '오브제화환', '축하오브제1단', '오브제2단(신화환)', '1단 축하오브제', '리스 오브제', '원형오브제'와 같은 명칭으로 화환을 판매하고 있었고(을 제13호증), 2025. 9. 2. 기준으로 화환 받침대가 '2단오브제', '화환오브제'와 같은 명칭으로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을 제14호증).

⑤ 2025. 4. 7. 기준으로 네이버에 '오브제화환'을 검색하면 60개 이상의 화환 판매업체가, 네이버 블로그에 '오브제근조' 또는 '오브제 화환'을 검색하면 수만 건의 게시글이, 네이버 쇼핑에서 '오브제화환'을 검색하면 9,000건 이상의 상품이 각각 확인된다(을 제16, 17, 18호증).

⑥ 그 외에도 2023년 화훼연구지인 'Flower Research Journal'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오브제 형태의 신화환'을 언급하고 있고(을 제25호증), 2025. 7.경 서울시 종로구가 행사를 위해 '오브제화환' 구매 공문을 작성하였으며(을 제22호증), 2025. 10.경을 기준으로 화환 배달업체들이 '오브제화환'을 상품명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었다(을 제15호증).

⑦ 피고는 "핑크플라워"라는 상호로 여러 종류의 화환을 판매해오고 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 4, 19, 36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전용 받침대를 사용한 화환 등'과 같은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06. 1.경부터 오브제화환을 판매하였고, 2007. 3.경 다음 블로그를 통해 오브제화환을 처음 소개하였다고 주장한다(갑 제3, 4, 19호증). 그러나 원고의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오브제'를 자타 상품의 식별이 아닌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 유형 중 장식용 받침대가 포함된 일부 상품 유형들('근조오브제화환', '축하 오브제화환', '오브제화환', '오브제 1단', '축하1단오브제', '근조1단 오브제')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호증 참조)²⁾. 나아가 2005. 10. 27. 이미 '분리형

화환(오브제) 전시회'가 개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오브제화환'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설령 원고가 '오브제'를 화훼업계에 도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을 받은 것은 2019. 2. 13.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등록일 전후로 언론 보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공보, 화훼연구지, 공문서 등에서 '오브제' 또는 '오브제화환'을 화환 받침대 또는 화환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2025. 4.경 다수의 업체가 '오브제화환'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오브제화환'에 관한 다수의 게시글도 존재한다. 이러한 거래계 및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오브제화환'은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기보다 '전용 받침대를 사용한 화환 등'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화환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위와 같이 '오브제화환'이 화환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되는 이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원고는, '오브제화환' 대신 '개량화환', '분리형화환', '신화환', '생생화환', '디자인화환'과 같은 대체 명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2019. 11. 28.부터 이 사건 심결일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대체 명칭들의 검색량이 '오브제화환'에 비해 매우 낮고(을 제29, 30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신화환'과 '오브제화환'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어들이 '오브제화환'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2025. 3. 25.에야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중지 경고장을 보냈는데,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통명칭화 방지를 위해 하였다는 조치들(갑 제36호증)

2) 원고는 이 사건 상표 출원 전부터 '오브제'를 사용해 왔다는 취지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판매한 상품 거래내역 중에는 '오브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들도 상당수이며 '오브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들로는 '화환 3단', '근조3단' 등이 있다.

은 모두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 이전에 이미 '오브제화환'이 거래계 및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보통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화체된 원고의 신용이나 일반 수요자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핑크 플라워'라는 별도의 상호로 그 출처표시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 화면을 보면 피고는 '오브제화환'을 '미니화환', '기타상품'과 같이 평범한 서체로 나란히 표시하였으며, 상품명 역시 '오브제화환 신화환 축하화환 결혼'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장식용 받침대가 있는 화환'이 아닌, '3단이나 5단 화환' 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풍선화환' 등의 상품에는 '오브제화환'이라는 용어를 써서 판매를 하지는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³⁾ 피고는 '오브제'를 자타 상품의 구별이 아닌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 유형 중 '장식용 받침대가 포함된 상품'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 주장의 위법 사유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현화

판사 시용재